

박근혜와 함께 ‘탄핵’ 되어야 할 박근혜표 12대 정책

2016. 12. 15.



-
- 작성자 : 민주노총 정책실 (02-2670-9110~7)
 - 민주노총 정책보고서는 민주노총 홈페이지(<http://www.nodong.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탄핵’되어야 할 박근혜표 12대 정책

1. 개요	1
2. 박근혜표 12대 정책	
1) 정경유착이라는 검은 거래관계의 산물, 성과연봉제, 양대지침 등 노동계약 ·	1
2) 청와대 공작정치의 산물, 전교조·공무원노조 법외노조화	2
3) 재벌들에게 준 대통령의 선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3
4) 박근혜-최순실 교과서, 국정 역사교과서	4
5)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산물, 조선업 구조조정	4
6) 국정농단 부역자의 공공기관 낙하산	5
7) 부의 세습,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5
8) 시민 안전 위협, 위협의 외주화·생명안전업무 외주화 정책	6
9) 의료·철도·에너지 민영화 정책	6
10) 대학교육 황폐화, 교육악법	8
11) 개성공단 폐쇄/사드 한국배치/일본군 ‘위안부’ 굴욕합의·한일군사정보협정	9
12) 법인세 감면, 사회복지 예산감축 정책	10
<첨부자료 1> [민주노총 총파업 요구안] 박근혜를 넘어, 일하는 사람들의 평등· 민주사회 건설	11

1. 개요

-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 놀음’을 하고 있음.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는 등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를 강화하고 있음. 박근혜에 대한 탄핵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정책·잘못된 정책에 대한 탄핵이기도 함.
- 민주노총은 ‘탄핵’되어야 할 박근혜표 12대 정책을 선정함. ▽ 정경유착이라는 검은 거래관계의 산물, 성과연봉제, 양대지침 등 노동계약 ▽ 청와대 공작정치의 산물, 전교조·공무원노조 법외노조화 ▽ 재벌들에게 준 대통령의 선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 박근혜-최순실 교과서, 국정 역사교과서 ▽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산물, 조선업 구조조정 ▽ 국정농단 부역자의 공공기관 낙하산 ▽ 부의 세습,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 시민 안전 위협, 위험의 외주화·생명안전업무 외주화 정책 ▽ 의료·철도·에너지 민영화 정책 ▽ 대학교육 황폐화, 교육악법 ▽ 남북관계·동북아 평화 과탄정책(개성공단 폐쇄/사드 한국배치/일본군 ‘위안부’ 굴욕합의·한일군사 정보협정) ▽ 법인세 감면·사회복지 예산감축 정책 등.
- 박근혜표 정책 청산은 박근혜를 넘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전제 조건임.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시민의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위해 박근혜와 탄핵되어야 할 12대 정책 청산을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

2. 세부내용

1) 정경유착이라는 검은 거래관계의 산물, 성과연봉제, 양대지침 등 노동계약

- 지난 2월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박근혜가 독대할 때, 청와대에서 준비한 이른바 ‘대통령 말씀 자료’에는 ‘시내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 밝혀짐. 이는 대통령이 직접 SK그룹의 ‘소원’인 면세점 사업권을 다시 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정책 변경을 추진했다는 점을 의미함. 재벌들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내는 대가로 청와대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점을 보여줌.

- 노동계약도 마찬가지로. 재벌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을 모금하고 그 대가로 노동계약을 추진한 정황이 밝혀짐. 전경련은 2014년 7월 노동계약을 비롯한 규제개혁 종합건의를 제출하였고, 이는 2015년 정부 핵심과제로 추진됐음. 2015년 7월 박근혜는 청와대로 재벌총수 17명을 불러 재단 기금 출연을 요구했음. 그 뒤 노동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됨. 9월 노사정 합의에 이어 정부·여당의 노동계약 5법이 발의됨.
- 박근혜는 10월 말 미르재단 입금이 완료되자 국회에서 소위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계약 5법 등 대표적인 친재벌 법안 통과를 촉구하였음. 또한 연말연초 K스포츠재단 입금 완료를 전후해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2대 지침을 발표함. 이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지침임. 노동계약 입법은 19대 국회에서 끝내 무산되었으나 정부는 공공기관·금융부문·공직사회 등을 대상으로 2대 불법 지침의 내용을 담은 성과연봉제 지침을 강제 도입함. 그리고 여당은 20대 국회 들어 제1호 법안으로 노동계약 법안을 재발의, 현재 국회 계류 중임.
- 박근혜 정권은 탄핵소추까지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정책을 포기하지 않음. 특히 탄핵소추 전날인 12.8.에는 <2017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임금을 동결하도록 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우수기관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정책을 강행함. 이러한 조치는 탄핵소추 후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계속됨. 경제부총리 후보로 거론되던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도로 금융공기업에 이어 민간은행에까지 성과연봉제 강요, 이에 따라 12.12. 아침부터 8개 민간은행은 일제히 이사회를 비밀리에 개최하여 임금체계 변경을 불법 강행하였음.
- 재벌의 뇌물 상납 대가로 추진된 노동계약 법안 및 불법 지침은 즉각 폐기되어야 함. 공공부문 및 공직사회의 성과연봉제·퇴출제 도입 정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함. 특히 공공기관에서 불법적인 이사회 의결 등으로 도입된 성과연봉제·퇴출제는 전면 무효화해야 함. 노동계약을 사업장 단위에서 강제하기 위한 단체협약시정지도 역시 중단되어야 함.

2) 청와대 공작정치의 산물, 전교조·공무원노조 법외노조화

-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업무수첩)에 따르면,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4년 6월15일부터 12월1일까지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남. 전교조를 국정 2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전임자 직권면직, 단체협약 해지, 사무실 퇴거 등

구체적인 지시까지 포함되어 있었음. 이는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박근혜-김기춘의 공작정치의 직접적인 결과임을 드러냄.

- 박근혜 정부는 정부 출범 직후, 전교조 규약 부칙 제5조 제2항이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어 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의 제2조 정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결정하고, 이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함. 법외노조 통보는 이미 합법적인 지위를 가진 노동조합에 대해서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법이 보장하는 자격과 권한을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행정처분만으로 제한하는 위헌적 제도임.
-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도 전교조와 동일하게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부여를 문제 삼아 반복적으로 반려되고 있음. 공무원노조 규약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서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두고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함. 특히 2013년에는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공무원노조 간 노조 설립 필증 교부와 관련하여 상당한 교감이 있었음에도, 김기춘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이후 태도가 돌변하여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가 반려됨. 이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 반려도 청와대의 강력한 의중이 반영된 것임을 의심케 하는 사안임.

3) 재벌들에게 준 대통령의 선물, 기업규제완화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 박근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재벌들의 돈이 입금되면 곧바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요청함. 이는 양자 간 대가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갖게 함. 특히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으로 떠오른 차병원 그룹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의료영리화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함.
- 70여개 조항에 걸쳐 각종 법에 대한 특례를 열거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도 최순실과의 연관성이 의심되고 있음.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소유한 평창 지역의 땅에 대한 개발 규제 완화 및 개발에 따른 부담금 감면의 내용이 포함돼 있음.
-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의료나 교육, 복지, 철도 등을 영리적 산업진흥 정책으로 삼겠다는 것이고, 그 전권을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일임하는 것으로 공공부문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가속화하겠다는 것임.

- 규제프리존법은 재벌들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환경, 의료, 개인정보보호, 경제민주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는 내용으로, 대기업이 지역별로 맡아 추진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도 직결되어 있는 재벌특혜법임.

4) 박근혜-최순실 교과서, 국정 역사교과서

- 역사교과서 국정화에도 ‘최순실’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드러났으며, 국정농단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됨. 박근혜는 국무회의 당시,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된다. 전체 책을 다 보면 그런 기운이 온다”고 언급했는데, 이러한 연설문 작성과 국무회의 결정과정에 최순실이 개입한 정황이 폭로되고 있음.
- 또한 국정화 역사교과서 집필에 깊게 관여한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박근혜 재단’인 미르·K스포츠재단의 자금을 모으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직접 추천했는데, 이 역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국정농단의 결과임을 보여줌.
- 절대 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

5)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산물, 조선업 구조조정

-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중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 진웅섭 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른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산업은행에 대한 업무상배임 행위를 교사 혹은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음.
- 정부는 조선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경쟁력 운운하며 산업개혁 논리를 결부시켜 구조조정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애당초 사태의 본질은 ‘산업경쟁력’이나 ‘산업개혁’이 아니라 경영진·국책은행·금융당국의 총체적 무능·부패·비리가 응축된 ‘대우조선해양 부실 처리 방안’을 은폐하기 위한 방안에 불과함. ‘조선 게이트’로 규정해도 부족함이 없음.
- 현재 조선업은 2015~18년 간 설비 23%, 인력 32%를 감축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조선업에서만 7~8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됨. 정

부는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대량해고를 전제로 한 기만적 실업대책이 아니라 총고용과 계속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우선 마련하고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해야 함.

6) 국정농단 부역자의 공공기관 낙하산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인사들이 각종 공공기관에 낙하산으로 포진됨. 김종 문체부 차관(전문가가 아니라 최순실 인맥으로 임명),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장(차은택과 인연으로 임명), 홍기택 산업은행장(대통령인수위 인연으로 임명, 부인이 최순실 측근이라는 의혹) 및 이를 통해 임명된 대우조선해양 임원들(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 등),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대통령인수위 인연으로 임명), 현명관 마사회 사장(정유라 승마특혜 연루, 전 삼성물산 회장/전경련 상근부회장), 서창석 서울대병원장(대통령 주치의) 등이 대표적인 ‘박근혜-최순실 부역자들’임.
- 이와 함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및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삼성물산 합병 과정 특혜), 홍순만 철도공사 사장, 강영일 철도시설공단 이사장(국토부 관료 낙하산들로 성과연봉제 파업 장기화 및 노조탄압에 앞장) 등도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정책에 부역한 자들로서 권력형 낙하산으로 볼 수 있음
- 박근혜 정권은,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요한 정치 경력을 알리오 상에서 은폐하거나 상식적으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정실이나 연줄을 통해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하기도 함. 권력을 통해 공공기관 자체를 사유화한 것임.
- 권력형 낙하산으로 내려온 인물은 문제가 되는 정책 및 청탁이라도 권력의 요구를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비리와 부실 운영의 온상이 됨. 박근혜 정권의 창조경제 정책과 최순실·차은택 라인에 의한 특혜와 비리,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 노동개약과 성과퇴출제, 최경환의 채용청탁비리 등은 모두 낙하산 기관장들이 연루된 것임.

7) 부의 세습,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 노동개약법,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더불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도 미르·K스포츠재단에 재벌들의 후원금이 입금되자 ‘민생법안’으로 둔갑되어 청와대가 나서서 국회처리를 압박함.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재벌들의 후원금이 1차로 마감된 다음날 국회에서 재벌들이 요구하는 법률(노동개약법, 서비스법, 원샷법 등)을 민생법안이라며 강조했고, 2차로 입금을 확인하면서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조속한 입법을 강조함. 동시에 전경련과 함께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함.

- ‘원샷법’은 ‘선제적 구조조정=사업재편’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재벌의 경영권 강화 및 경영 세습을 위한 특혜 법률임. 재벌들은 이 법률을 그룹 차원의 지배력 승계와 일감몰아주기 과제 등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재벌들은 2.7%에 불과한 총수일가 지분율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경영권 방어수단인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부의 편법·위법적 상속 증여 경영 세습 수단으로 활용함.

8) 시민 안전 위협, 위협의 외주화·생명안전업무 외주화 정책

- 매년 2,422명이 노동자 산재사망이 계속되고 있으며, 하청 산재사망이 약 40%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2016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주요 30개 기업의 산재사망 중 하청 노동자는 95%에 달함. 그러나 대기업들은 산재예방과 보상에 대한 책임과 처벌에서도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위험업무의 외주화로 30대 대기업이 받는 산재보험 할인은 2015년에만 4천 981억 원임.
-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등 철도, 지하철, 항공, 버스 등 공공교통 분야, 메르스 사태 등에서 드러난 병원의 외주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화학물질 폭발누출사고, 원전의 37%에 달하는 하청 고용 등 사회 전반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는 하청 노동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민주노총은 ▽ 국내외 입법례와 같이 유해위험업무 및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생명안전업무의 도급·재하도급, 기간제 및 파견사용 금지 ▽ 원청 책임 강화 ▽ 하청 노동자를 포함하는 산재사망과 시민재해에 대한 기업의 법인 처벌, 최고 책임자 처벌, 관련 공무원 처벌을 강제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함.

9) 의료·철도·에너지 민영화 정책

- 영리자회사 도입·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의료영리화·민영화 정책 추진한 반면, 국민건강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박근혜 정부는 집권 이후 광범위한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함. 대표적으로 영리자회사 도입, 부대사업 범위 확대, 원격의료 추진, 인수 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 신의료기기 출시 간소화,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 규제 완화, 국제의료특별법 제정 등이 대표적임.

- 공공병원 축소·의료민영화 확대 정책은 국민건강을 민간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한편, 정작 필요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나 의료비 국민 부담 감소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상 계획이 전무했음. 건강보험은 최근 7년 동안 지속적 흑자를 기록해 2016년 말 20조에 달하는 누적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보장성 확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입원료 본인 부담률 인상 등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민간자본 투자 유치를 통해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공공철도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임. 박근혜 정부는 지난 6월 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및 7월 ‘민자철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14개 노선에 대해 19조 8천억 원 규모의 민간자본 투자사업 추진 발표함. 국토부는 민간자본에 대해 철도노선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권리와 함께 역세권 개발과 기존 철도노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자본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방안을 제시함.
- 국토부는 철도 민자 사업이 ‘국가소유 / 민간운영’의 형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는 입장임. 하지만, 경부·호남고속철도가 모두 지나가는 알짜 노선인 ‘경기 평택~충북 오송’ 등 핵심 노선자위를 민간투자-운영에 넘김으로서 민간 자본의 막대한 수익을 보장함. ‘평택~오송 고속철도’ 구간은 정부 계획 발표 전인 2016년 2월 현대산업개발이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것으로 결국 정부가 재벌의 제안을 수용한 것임.
- 한편 지난 7월 11일 국토부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중 민자투자 1호 사업에 포함되었던 ‘춘천~속초 고속철도’ 구간에 대해 재정 사업 전환 검토를 발표함. 이 구간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것인데, 이는 결국 ‘돈이 되는 구간은 민간자본이, 돈이 안 되는 구간은 공공이’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님.
- 정부는 지난 6월 14일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 방안’을 발표함. 추진 방안의 핵심은 ▽ 전력 소매판매 규제 완화 및 단계적 민간 개방, 경쟁체계 도입 ▽ 가스 도입·도매 분야 민간 직수입 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한 후, 2025년부터 단계적 민간 개방, ▽ 발전 5사 신규 발전기에 대한 한전KPS의 정비 독점 폐지, ▽ 화력발전 정비시장 민간개방 확대, ▽ 한전기술의 원전 상세설계 업무 민간개방 확대, ▽ 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8개 에너지 공공기관 주식 상장 추진(2017년), ▽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등 2020년까지 단계적 구조조정 등임.

- 이는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자원 개발 정책으로 발생한 공공기관 중복 투자 등의 문제 해결을 빌미로 사실상, 전력, 가스, 통신 등의 공공부문을 민간 시장에 대폭 개방하는 정책임. 에너지 부문 시장개방과 경쟁체제 도입, 주식 상장 등은 에너지 공급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고배당 등을 통해 일방적 주주 이해관계만 반영할 위험성이 큼.
- 박근혜 정권은 민영화를 끝내 강행하고 있음. 탄핵소추가 결정된 바로 전날까지 발전공기업 (한수원 포함), 가스기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주식을 상장하여 단계적 민영화로 가는 첫발을 내딛는 결정 강행

10) 대학교육 황폐화 교육악법

- 박근혜 정권은 2014년부터 대학구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비리부실재단들이 대학을 엉망으로 운영한 뒤 거액의 돈을 받고 먹튀 할 수 있는 대학구조개혁법들을 청부입법발의 하였음.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것을 2016년에도 또다시 발의함. 이 법 시행 시, 앞으로 10년 내 한신대 규모의 대학 100개 정도가 사라지는데도 교수, 직원, 학생, 지역사회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오로지 부실재단의 이익을 챙기는 데에만 집중이 되어 있음. 이를 주도하는 결정적 권한은 모두 교육부 장관이나 그가 임명하는 구조개혁위원회에 있음.
- 법이 통과되기 전임에도,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정책으로 정권의 입맛에 따라 대학을 A~E등급으로 나누고 시너처럼 통제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국립대 총장직선제가 폐기되고(대량감점), 이에 항거해 교수가 투신자살하고, 교수가 평가업무에 시달리느라 교육의 질과 연구력이 떨어지고, ‘보여주기식’ 사업과 꼼수 취업률 높이기가 횡행하며, 무늬만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높이느라 비정규교수가 대량해고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국민의 교육권이 파괴됨.
- 대학시간강사제도는 박정희 군부쿠데타 직후 교수 탄압을 위해 1962년에 도입됨.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시간강사에게 고용안정이나 임금 및 처우개선 없이 무늬만 법적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교수직의 비정규직화’를 획책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약 7만 명에 달하는 시간강사들 중 3만 명 이상이 대량해고 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시간강사 현실에 맞지 않는, 주당 법적책임시수 9시간 이상 적용 때문임.) 2011년 시간강사법이 만들어졌을 때, 아직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1만 명 이상이 해고된 전례가 있음. 여기에 더해, 2016년 11월 정부는 1년이 경과하면 강사의 자동해고를 허용하는 시간강사법 개악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임.

- 대학설립 시 필요한 교원, 교사, 교지 등을 철저히 지키도록 해야 하고(대학설립운영규정 법제화), 이를 못 지킬 시 부실(비리)재단을 퇴출시키고 사립대학을 공영화해야 함. 이들 공영형 대학(정부책임형 사립대학)들과 국립대학들을 통합네트워크로 만들어 대학을 평준화하고,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함. 이 대학통합네트워크는 등록금 무상 원칙 하에 기존 입학시험 제도 대신 자격고사 제도를 통하여 신입생을 선발한 뒤 지역에 관계없이 공동학위를 수여함으로써 학벌 철폐를 하는 시스템임. 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등록금 부담과 타지역 거주 부담 및 입시 사교육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음. 또한 ‘비정규직없는대학만들기’로 조교, 교직원 및 간접고용노동자의 권익도 보장해야 함.

11) 남북관계·동북아 평화 파탄 정책(개성공단 폐쇄·사드 한국배치·일본군 ‘위안부’ 굴욕합의·한일군사정보협정)

- ‘통일 대박’도, 개성공단 폐쇄도 ‘최순실’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통일대박’은 박근혜가 내세운 통일 정책의 대표적 상표지만 대통령이 사용할 언어로 적절치 않아 논란을 일으킴. 대표적인 상품 ‘통일대박’조차 박근혜 문고리 3인방과의 회의에서 최순실이 제안한 것이라고 검찰이 발표함.(SBS 뉴스) 이는 박근혜 통일정책이 국정농단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임을 보여줌.
- 2014년 6월, 스키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의 한반도 사드 배치 발언 후, 한국정부는 ‘미국과 어떤 협의도 없다’고 주장함. 2016년 1월 13일 박근혜 정부가 북핵 실험(1/6)을 계기로 북 제재를 위해 중국 압박 카드로 ‘사드 배치’를 언급하면서, 사드 한국배치는 급물살을 탔. 7월5일 국방부장관 한민구는 국회에서 “사드배치 여부 등에 보고 받은 바 없다”고 했으나, 7월 2~5일 미 국무부 차관보 로즈(MD 담당) 방한 3일 만인 7월 8일에 사드 한국배치와 성주지역 배치가 결정됨. 이후 사드 배치 ‘최적지’는 성주골프장으로 바뀜. 성주, 김천, 원불교 등의 ‘사드 반대, 한반도 평화 실현’ 촛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
- 국민 59%의 반대(11/18, 갤럽 조사)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부역자들인 국무위원들은 11월 22일, 매국적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한일군사협정)’을 졸속으로 의결함. 2주째 서울과 전국에서 진행된 100만 촛불은 박근혜 정부가 내치든 외치든 국정을 이끌 능력도 자질도, 도덕성도 없다는 것을 웅변함. 그럼에도 정부는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강행함. 청와대 내에서조차 미국 새 행정부 출범이후 하자는 의견이 목살되었고, 박근혜 지시로 협정 체결을 밀어붙였다고 함.

- 합의문도 없이 양국 외교장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합의 이후, 일본 아베 수상은 공식적 사과를 거부했고, 오히려 일본으로부터 합의를 지키라고 강요받고 있음. 일본군 ‘위안부’ 굴욕 합의는 피해자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것은 물론 피해 당사자가 25년간 투쟁을 통해 세운 국제적 해결 기준에도 미치지 못함. 10억 엔에 인간의 명예와 존엄을 짓밟음.
- 사드 한국배치에 영향력을 행사한 국정농단의 진실을 규명하고, 동북아 및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 한국배치를 폐기해야 함.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우선적인 조치로 폐쇄된 개성공단을 정상화해야 함. 또한 일본군 ‘위안부’ 굴욕합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무효화해야 함.

12) 법인세 감면·사회복지 예산감축 정책

- 2016년 복지예산 후퇴부터 “2016년 예산 편성시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 지시 등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기인함.(안철수 의원, 2015년 국정감사) 기재부 등 경제부처와, 국가정책조정회의는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복지예산 감축을 주도, 2016년 예산에서 복지예산은 오히려 전년도보다 감축, 2017년 예산안에는 물가상승에도 미치지 못하는 0.1% 증가에 불과로 사실상 감축함.
- 2017년 예산에서 교육급여 및 주거급여 예산을 포함한 기초보장분야 예산 증가율 6.4%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절대적 감액, 이는 기초연금이나 의료급여 등 의무지출예산의 자연증가분에도 턱없이 부족하게 되었음.
- 법인세 감면에서 10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25.5%에서 작년 38.7%로 급증. 이들이 받은 조세감면 규모가 2조4190억 원에서 3조7272억 원으로 1조3082억 원으로 증가. 순이익 상위 1% 5,500개 기업이 전체 기업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0%이지만 전체 법인세 감면액의 81%를 차지함.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면 조치로 매년 7조원에 육박하는 법인세가 감면되고 있음. 지난해 세수부족 5조6000억 원은 법인세 감면이 없었다면 세입추경(세수가 부족해 국채를 발행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됐다는 의미임. 한편에서 재원 부족을 이유로 한 복지재정 축소는 대기업 위주의 감세 정책의 결과인 만큼, 법인세 감면은 즉각 폐지해야할 정책임.

<첨부자료 1> 박근혜를 넘어, 일하는 사람들의 평등·민주사회 건설

모든 노동자가 행복한 평등사회

- ① 최저임금 1만원 실현
- ② 위험의 외주화 금지·생명안전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실현
- ③ 비정규직(특고·간고), 공무원, 교원 등 모든 노동자 ‘노조할권리’ 보장
- ④ 청년 ‘좋은일자리’ 창출
- ⑤ 외주·위탁·용역·파견·기간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 ⑥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모든 국민의 민주주의

- ⑦ 사회공공성 강화
- ⑧ 민주주의 실현

(1) 최저임금 1만원 실현

-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노동자 4명 중 1명이 저임금노동자이며, 하위 10% 임금 대비 상위 10% 임금 비율(D9/D1)이 거의 5배에 육박할 정도로 임금불평등이 심각함.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저임금 ‘나쁜 일자리’를 그나마 괜찮은 일자리로 전환하고, 극단적인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일거양득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턱 없이 낮은 수준임. 2016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월 1,260,270원(주40시간 기준)인데, 이 금액은 2년 전(2014년) 미혼단신 노동자 실태생계비 대비 81% 수준에 그치고 있음. 2인가구의 생계비(2,774,183원) 충족률은 45.9%, 3인 가구(3,363,173원)는 37.4%에 불과함. ‘유사근로자 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도 낮은 편임. 상용직노동자 시간당 임금총액 대비 31.1% 수준이고, 5인 이상 임금총액의 경우, 27.8%에 불과함.
- 최저임금 수혜자는 여성, 학생과 저학력층, 청년과 고령자,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 영세사업체, 비정규직 가운데서도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과 일용직, 무노조 사업장, 비조

합원 등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임. 즉,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일자리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수단임. 민주노총은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함.

(2) 위험의 외주화 금지·생명안전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실현

- 매년 2,422명이 노동자 산재사망이 계속되고 있으며, 하청 산재사망이 약 40%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2016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주요 30개 기업의 산재사망 중 하청 노동자는 95%에 달함. 그러나 대기업들은 산재예방과 보상에 대한 책임과 처벌에서도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위험업무의 외주화로 30대 대기업이 받는 산재보험 할인은 2015년에만 4천 981억 원 임.
-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등 철도, 지하철, 항공, 버스 등 공공교통 분야, 메르스 사태 등에서 드러난 병원의 외주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화학물질 폭발누출사고, 원전의 37%에 달하는 하청 고용 등 사회 전반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는 하청 노동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민주노총은 ▽ 국내외 입법례와 같이 유해위험업무 및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생명안전업무의 도급·재하도급, 기간제 및 파견사용 금지 ▽ 원청 책임 강화 ▽ 하청 노동자를 포함하는 산재사망과 시민재해에 대한 기업의 법인 처벌, 최고 책임자 처벌, 관련 공무원 처벌을 강제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함.

(3) 비정규직(특고·간고·이주), 공무원, 교원 등 모든 노동자 ‘노조할권리’ 보장

- 한국 사회가 직면한 핵심 문제 중의 하나인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노동자 스스로 임금과 고용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노조할권리’를 보장하는 것임.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에 대한 공안탄압과 현행 노동관계법의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노동조합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임.
- 특수고용,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이 부정되거나,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한이 봉쇄되어 있는 등 ‘노조할 권리’가 근본적으로 제약됨. 공무원, 교사, 교수 역시 법외노조

화되어 있으며, 파업권은 업무방해죄, 손해배상·가압류 등 민형사상 제약으로 인해 무력화되고 있음. 사업장 단위에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를 악용한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하고, 천문학적 손해·가압류로 인해 노조활동이 범죄화되고 있음. 또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공공부문 ‘정상화’ 계획을 통한 공공부문 노동조합 활동 억압 및 공공부문 대정부고섭 불응, 공격적 직장폐쇄 남용, 산별교섭 형해화, 단체협약 일방해지권 남용, 필수공익사업 노동자 쟁의권 과도한 제한 등 헌법상 노동기본권이 심각히 침해당하고 있음.

- 노동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노동자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단결권을 행사하는 수단인 ‘쟁의권’이 보장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노조법이나 판례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은 소위 ‘경영권 관련 사항’이라며, 이에 대항하는 파업을 불법화 하고 있음. 또한 노동관계법 개선 등 보다 근본적으로 노동자의 노동조건이나 고용을 제한하는 제도와 정책에 대항하는 파업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박근혜 게이트와 같이 재벌대기업이 뇌물을 상납한 대가로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거나, 사용자 임의로 노동자들을 집단 퇴출시키는 구조조정 등에 맞선 파업도 정부는 사사건건 불법으로 몰아붙이고 있음. 따라서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쟁의권을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실질적인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함.
- 현행 노조법은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실제 주요 군수물자를 생산하지 않는 노동자도 방산물자 생산업체에 속해있다는 것만으로 쟁의권을 박탈당하고 있음. 특히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나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공익사업장 노동자의 쟁의권을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방위산업이나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최소업무 수준으로 한정하도록 노조법 개정이 필요함.
-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노동기본권법이 보장되어야 함. 궁극적으로 노동허가제가 도입되어야 하며, 그 전이라도 고용허가제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폐지하여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함. 또한 근로기준법과 어긋나는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폐지, 이주노조 노조활동 및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함.
- 오늘날 노동-자본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가장 근본적인 정책수단은 임금과 고용, 노동조건 향상 등을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조합할’ 권리, 즉 노동기본권을 실제로 보장하는 것임. 정부는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자 스스로 임금과 고용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비정

규직(간고, 특고, 이주)과 공무원·교사·교수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권리’를 보장해야 함. 이를 위해 ▽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의 확대’ ▽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가로막는 노동관계법 전면 재개정 ▽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이 필요함.

(4) 청년 ‘좋은일자리’ 창출

- 청년 실업률은 2016년 10월 기준으로 8.5%에 달함. 이는 IMF 위기 직후 1999년(8.6%) 이래 최고치임. 사실상의 실업자라고 할 수 있는 취업준비자가 65만 명에 달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현재 청년 실업은 대단히 심각함.
- 박근혜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희망재단’ 사업을 추진함. 이는 정부 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를 국민과 기업의 모금으로 해결하려는 근본적인 문제와 더불어, ‘노동관 미르·K스포츠재단’이라고 할 만큼 이곳에도 ‘최순실·차은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이 제기됨. 청년희망재단은 지금까지 4만 5,972명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이 가운데 2.5%가량인 1,172명만 취업에 성공했을 정도로 실효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
- 또한 박근혜 정부는 ‘청년 실업’을 핑계로 임금피크제, 통상임금 범위 축소, 연장수당 할증률 축소 등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노동조건을 공격하고, 파견제·기간제 등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노동개악’을 추진하기에 바빴음.
- ‘청년 좋은 일자리’ 창출의 첩경은 노동시간 단축임.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 ‘실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등 노동시간단축·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과 ▽ 휴일노동의 연장노동 포함 등 근로기준법 개정 ▽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불법적인 노동부의 행정해석 폐기를 요구함.

(5) 외주·위탁·용역·파견·기간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구체적 정책을 수립해야 함.
- 공공부문의 경우 직접고용뿐만 아니라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도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해야 함.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업무성적, 성실도 등 자의적인 기준으로 전환여부 판단해서는 안 됨.

- 민간부문에서도 재벌 대기업부터 상시·지속 업무를 정규직화해야 함. 재벌 대기업에서부터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고,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하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함.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일자리도 정규직 직접고용을 의무화해야 함.
- 현대자동차 등 재벌 대기업은 불법과건 대법원 판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하지 않고 있음. 관리 감독의 의무를 지닌 정부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며 재벌 대기업들의 불법적 행태를 조장하고 있음. 재벌 대기업들은 즉각 사내하청 업체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 아울러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수배, 고소, 고발, 징계, 해고, 손해배상, 가압류 등을 철회해야 함.

(6)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과 민간 대기업 정규직 전환 유도’)임. 하지만 정부는 공공부문 직접고용으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고용으로 전환해야 함.
- 재벌 대기업은 지불 능력이 충분함에도 간접고용 비정규직 확산의 주범임. ‘고용형태 공시제 현황’에 따르면, 10대 재벌 노동자 130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49만 명(37.7%)임. 이 가운데 기간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9만 명(7.0%)이고,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40만 명(30.7%)임. 전체 재벌로 확대할 경우 64만 명에 달함. 재벌계열사 사내하청 대부분이 상시·지속적 일자리이자 불법과건이라는 점에서, 이들 일자리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
- 민주노총은 중간착취 배제 등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9조에 항을 신설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도급·위탁·용역 등의 명칭을 불문하고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고용을 금지하는 규정의 신설을 통해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함.

(7) 사회공공성 강화

- 모든 국민들은 실업·해고·산재·노후빈곤 등으로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불안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음. 또한 교육·의료 등 필수적인 부문의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복지예산을 확충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사회안전망과 사회공공성을 보장해야 함.
- 실업급여 제도를 강화해 자발적 이직자 등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보장성 및 지급기간을 확대해야 함. 또한 실업급여제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제외될 수밖에 없는 청년실업자, 폐업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실업부조제도를 신설해야 함.
-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사회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및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등 전반적인 사회보험제도의 강화가 필요함.
- 건강보험 12조 흑자국면을 명분으로 정부는 국고지원금을 깎으려고 함. 정부는 2016년 말까지 지원하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축소, 공적 재원보다는 민간 재원으로 민간보험 시장 확대 및 의료산업화 추진을 더욱 노골화 할 것임. 건강보험 흑자의 원인은 낮은 보장성에 따른 것으로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제해야 함.
-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 하에,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철회하고, 교육재정은 내국세의 25%까지 확충해야 함. 또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해야 함.

(8) 민주주의 실현

-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치공동체 원리와 주권재민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헌법 수호의 제1 책임자인 대통령 스스로가 위반한 '헌법 유린'이라는 점임. 주지하다시피 헌법 제1조는 우리 정치공동체의 원리로서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면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국정을 대통령 본인이 수행하지 않고, 공무원조직을 벗어나 민간인에게 중요한 국정운영과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박근혜는 헌법 제69조에 명시

된 대통령의 책무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선서를 위반함.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행정부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권한을 부여하고, 많은 청와대 비서실 인사권이 부여된 것은, 대통령이 국가의 인적시스템을 잘 가동해서 ‘헌법을 준수하고 …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헌법 제69조)을 믿기 때문임. ▽ 하지만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어 공무원 인사문제를 좌우하였다면,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해하는 것이고(헌법 제66조, 제67조의 대의민주주의) ▽ 대통령의 ‘성실한 직무수행의무’를 위배한 것이며(헌법 제69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 ▽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한 직업공무원의 신분(헌법 제7조)을 민간인이 좌우한 것으로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한다’고 한(헌법 제78조) 헌법취지에 위배된 것임. 이러한 위배행위는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해 준 신뢰를 배신한 정도로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할 수 있음(법률신문, 2016.10.31.).
- 또한 이번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는 정권과 재벌의 유착을 통한 노동개악 추진 등 노동권(헌법 제32조, 33조) 침해, 검찰·경찰·국정원과 같은 억압적 국가기구를 동원한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헌법 제21조) 침해와 같은 광범위한 반민주·반민중 정책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
-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자유와 평등을 상호 배척 관계로 바라보는 일반적인 오해와 달리 시민들의 ‘평등 없이 자유 없고 자유 없이 평등 없다’는 데 있음. 또한 ‘시민 중의 시민’으로서 노동자의 권리 확대가 민주주의의 경계를 확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우리가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분노하는 것은 단지 박근혜라는 한 통치자의 일탈 때문만이 아니라 ‘박근혜’로 인격화된 현재의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이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가치, 사상과 양립 불가능하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양도 불가능한 우리 노동자-시민의 권리와 충돌하기 때문임.
- 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포함해 헌법을 정면에서 위반하여,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함.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이 필수적임.

-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언론 게이트’라 규정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 언론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냄. “언론 게이트는 추악한 거래가 드러나지 않도록 여론을 통제하고 저널리스트를 해고하며 표현의 자유를 말살했던 진실 은폐의 문고리 권력”이며, “낙하산으로 내려와 공영방송 사장이 되고 이사회를 장악하며 방통위와 방심위 등의 언론기관을 지배한 게이트를 지키는 최전방의 게이트”임.
- 박근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성우 전 수석, 최성준 방통위원장 등은 최순실 게이트 등 비선실세 비리, 대통령과 청와대의 잘못 등을 은폐하기 위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함.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의 국정 농단 범죄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와 수석비서관들이 언론까지 직접 통제하려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음. 결국 사실로 드러난 비선 실세 의혹을 초기에 틀어막고자 대통령과 비서실장, 수석비서관들이 공모해 언론의 자유를 짓밟았음. 정운회 문건을 보도한 언론사와 대주주에 대해서는 세무 조사, 미행, 경영진 교체 등 불법적인 겁박을, 공영방송사에 대해서는 보도와 인사개입으로 ‘권력 비판 보도’를 통제함. 이번 사태는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 언론 개혁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줌.
- 다수의 국제기구들은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개선을 권고하고 있음. 국제노동기구(ILO)는 제104차 총회에서 한국 정부의 차별금지협약 이행에 관해 이주노동자 및 여성에 대한 차별, 정치적 의사표현에 따른 차별 등 묵은 과제들이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동시에 고용 직업상 차별 해소를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함. 유엔 자유권 위원회도 “인종·성별·성적 취향 등에 근거한 차별을 막을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동성애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동일 노동·동일 임금 원칙 보장, 미혼모에 대한 차별 철폐를 촉구”함.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국민이 동일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함.
- 민주주의의 한 단계 진전을 위해서 정치제도의 개혁도 절실함. 선거의 ‘평등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도록 하는 전국단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이 절실함. 중앙선관위는 지역구의석수 대 비례대표 의석수를 2:1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현재의 단순다수대표 지역소선거구제는 정치독점과 대량의 사표를 낳고 있음. 전국단위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통해 표의 등가성을 확보해야 함. 또한 현재 의원정수로는 다원화된 한국사회를 감안할 때 다양한 계급 계층의 정치참여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인구 10만 명 당 의원 1인

을 배정하고 있는 타국의 사례를 감안하여 국회의원 의석수를 증원해야 함. 또한 대통령선거에서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대표하기 위해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함.

- 참정권은 대다수 국민에게 주어져 있는 보편적인 정치적 권리임. 그러나 현행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제반 법규는 일반시민과 달리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있음. 특히 정당 가입 자체를 형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 헌법 제8조 제1항으로 보장된 정당 설립, 가입, 탈퇴, 선택의 자유 등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음. 공무원과 교사, 공공기관 및 협동조합 직원에게 정치중립의무는 공익적인 업무를 수행에 있어서 정치적 불편부당을 위한 것임에도 국민 모두에게 보장되는 정치적 기본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함.

유엔 집회·결사의자유 특별보고관은 공무원·교원 등의 정치활동 금지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미명 하에 광범위한 의제들에 대해 스스로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역량에 폭넓은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함.

ILO 전문가위원회(2016년)는 “[한국]정부가 ILO 111호 협약(차별금지)에 제시된 바대로 초중등 교사가 학교 밖에서 직무와 무관하게 행한 활동과 관련한 정치적 견해를 바탕으로 한 차별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정치활동을 이유로 징계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하라”고 권고함.

-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 공무원·교사, 공공부문 노동자 정치기본권 보장 ▽ 공무원과 교사가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공무원·교사의 후원회 가입 허용 (정치자금법 제8조 개정) ▽ 중앙당 후원회 신설 및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표현의 자유 보장 ▽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약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과 시행령 개정 등이 절실함. 한편 진정한 노동자 민중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는 집회·시위 자유가 전면 보장되어야 함.

<첨부자료 2> 산업별 요구

1. 제조업 발전 특별법 제정

-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제조산업협의체 구성 - 제조산업협의체는 관련 중앙행정기관, 사용자단체, 사용자협회, 연합단체 및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구성하여 제조산업에 대한 주요 사업정책 방향을 논의, 결정하는 협의체임
- 대규모 구조조정시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한 논의 의무화 - 대규모 구조조정시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협의기구의 구성을 의무화하고,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해 구조조정의 실시여부 및 방법, 절차 등이 이행되도록 함. 또한 정리해고가 적법하더라도 해고된 근로자의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 계획과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의 지원, 우선재고용계획등 재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부정하도록 함.
- 제조산업발전기금 조성 및 지원 - 제조업발전, 고용보호 및 고용창출을 위한 제조업 발전기금을 국내 총생산의 3%가량 조성하고 제조산업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하여 집행하도록 함
- 외국인 투자심사절차 강화 -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를 외국인 투자 제한사유로 추가 규정하고 외국자본의 유입단계에서 각 제한사유 해당여부를 제조산업협의체에서 심사토록 하며 외국인 투자자가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산업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지원한 내용에 대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함.

2.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상생의 건설산업

1) 건설노동자 안정된 삶 보장 - 적정임금 제도 도입

- 건설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있음. 이렇듯, 건설노동자의 저임금 문제가 고착화되면 청년층의 건설업 취업기피와 비숙련 노동자 확대로 인해 건설공사의 품질이 떨어지고 부실화되어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임.
- 따라서, 미국의 프리베일링 웨이지(Prevailing Wage) 제도와 유사하게 정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공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을 현실화하여 안정된 생활보장을 위해 적정임금 및 적정임대료를 정부나 지자체가 고시하고 고시한 금액이상으로 지급되도록 하

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임.

- 적정임금(임대료)제도를 통하여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하여 중산층을 육성,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 4대보험 가입확대와 세수확대 등 경제 성장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공사를 가장 우수한 업체와 건설기능이 있는 노동자에게 맡겨 우수한 품질의 생산물을 만들고자 함. 직종별 적정임금은 각 직종별로 통용되는 시중임금을 조사하여 결정하며 업종별 최저임금과는 별개임.

2) 건설산업 중간착취 구조개선 - 다단계하도급 근절 및 직접시공제 확대

- 현재 등록된 건설업 숫자는 2012년 기준으로 일반(종합)건설업이 11,304개, 전문건설업이 58,994개로 전국의 편의점 숫자(약2만여개)보다 더 많은 숫자임. 그러나, 시공실적이 있고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이기보다는 일명 ‘페이퍼컴퍼니’가 대다수임. 특히, 전문건설업체의 수가 일반건설업체보다 5배 이상 많아 제살깎기식의 경쟁으로 몰리면서 전문건설업체에 고용되는 대다수 건설노동자의 노동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임금 체불액 증가에 산업안전관리 취약으로 산업재해발생도 건설업만 유독 증가하고 있음.
- 제도적으로 다단계하도급 금지는 명문화 되어 있으나, 건설현장에서의 다단계 하도급은 근절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이에 만약의 근원인 다단계 하도급의 근절이 필요함.
- 또한, 직접시공제 확대를 통한 직접고용 증가로 양질의 일자리를 양산하여 건설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더불어, 업체간 전문성 확보 및 기술 개발 경쟁을 유도하여 무분별한 입찰 가격 경쟁이 감소되고, 이로써 안전하고 좋은 품질을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함.
- 직접시공제 전면 적용으로 건설산업의 일대 혁신과 선진화를 앞당겨 국민, 건설노동자, 건설산업이 모두 상생하는 길이 필요함.
- 건설산업 비자금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건설산업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 개선인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조종사’에 전자인력카드를 등록하게 하는 전자카드제 실시가 필요하며, 이는 투명한 건설현장을 만드는 것임.

3) 특수고용노동자(건설기계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 십 수년 동안 건설기계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라고 명명된 채, 노동자임에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의 사각지대에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노동 등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건설기계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의 심각성을 사회에 공론화시키고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노조법이 개정하여야 함.

4) 산별(원청) 교섭권 보장

- 현재 민주노총과 야당은 하청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원청 사용자 책임 인정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간접고용 하청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원청 교섭권 보장 투쟁이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임.
- 플랜트건설노동자들의 안전 확보와 노동환경 개선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원청사업주와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며, 이를 현장에서 안착시키기 위해 ‘원청교섭권 보장 노조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